



제418회국회(임시회)
제 6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

■ 조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19호)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국의원 등 24인
2. 발 의 일 : 2024. 8. 27.
3. 회 부 일 : 2024.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대상을 유족으로 보아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추가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u><신 설></u> <u><신 설></u>	제3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u>다음</u> <u>각 목의 어느 하나</u> ----- -----. ----- ----- ----- -----. 가.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나. 25세 미만인 형제자매와 제27조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이조 제4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가 있는 25세 이상인 형제자매

3.4. (생략) 제37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 3. (생략) 4.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지 아니한 <u>자녀 또는 손자녀</u>가 25세가 된 경우 5. (생략) ② (생략)	3.4. (현행과 같음) 제37조(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자녀, 손자녀</u> <u>또는 형제자매</u>-----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유족이 없는 군인의 경우 재해유족급여¹⁾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²⁾

1) 「군인재해보상법」 제7조(급여)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재해유족급여
- 가. 상이유족연금
 - 나. 순직유족연금
 -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라. 사망보상금

2) 「군인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와 직계친족이 없는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 형제자매에게 재해유족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임.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선원법」에서도 업무상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음.

[형제자매를 유족에 포함하는 법률]

법 률	관련 규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법 률	관련 규정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선원법	「선원법」 제99조(유족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 이를 고려할 때, 현행법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지급대상 범위 또한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로 넓혀 사망한 군인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경우 형제자매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다른 직역의 재해보상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³⁾

3)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형제자매를 유족에 포함하지 않는 법률]

법 률	관련 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한편,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보상을 받을 유족의 범위, 등록 절차, 발생시기,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 국민정서와 법적 안정성, 타 국가 공헌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의 영역”이므로,⁴⁾ 개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4) 2009헌바49,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정안과 같이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연금수급권과 사립 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을 형제자매에게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제자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⁵⁾

□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유족의 범위를 현행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⁶⁾」, 「공무원연금법⁷⁾」,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타 연금제도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2012헌마555, 2009헌바102 “현대의 가족구조가 통상 부모와 자녀의 2대로 구성된 핵가족화하고 있고,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중략)……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군인연금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7)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손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획재정부는 타 연금제도로의 과급효과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형제자매의 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4

※ 참고자료

○ 「군인 재해보상법」상 재해유족급여의 종류

구 분	기준금액	지 급 액
순직유족연금 (일시금)	개인 기준소득월액	• 기준금액의 43% • 유족 1명당 5%p씩, 최대 4명까지 가산
상이유족연금	개인 기준소득월액	• 상이연금액의 60% (상이연금액 : 개인기준소득월액×32.5%~52%)
사망보상금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4년 552만원)	• 기준금액의 24~60배

○ 공무원연금법의 유족 범위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2014.5.29., 2012헌마555 결정)

<주요내용>

가. 현대의 가족구조가 통상 부모와 자녀의 2대로 구성된 핵가족화하고 있고,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원리에 입각해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보장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험대상자에게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공무원연금제도와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장 형태로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을 뿐, 보험가입자,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재정조성 주체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와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하기는 하나, 제도의 도입 목적과 배경, 재원의 조성 등에 차이가 있고,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낮출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의 수급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산재보험법이나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자의 범위와 비교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의안번호 제2203216호, 조국의원 대표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u><신설></u> 6. ~ 8. (생략)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2. (생략) ③ (생략) 부칙 <u><신설></u> <u><신설></u>	제3조(정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형제자매 6. ~ 8. (현행과 같음) ② -----자녀, 손자녀 및 형제자매----- -----. ----- -----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 기산일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형제자매를 유족에 포함하지 않는 법률

법 률	관련 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손자녀,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인연금법	제3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법 률	관련 규정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손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 형제자매를 유족에 포함하는 법률

법 률	관련 규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유족의 범위 등)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선원법	제99조(유족보상)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의 사망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유족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0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선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국민연금법	제80조 (사망일시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제매)